

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 (설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	10277
번 호	

발의연월일 : 2017. 11. 21.
발 의 자 : 설 훈 · 김영진 · 이석현
이용득 · 조승래 · 오영훈
유은혜 · 김상희 · 안민석
소병훈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화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움. 그러나 재원 마련이나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.

또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등에 대한 규정도 없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된다는 문제점도 있음.

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,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5조 및 제6조).

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세워야”를 “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세워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“기본계획을”을 “기본계획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”로 한다.

제6조 중 “세우고 시행하여야”를 “수립·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”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④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제출 시기,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농업기계화 기본계획) ①</p> <p>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화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<u>세워야</u> 한다.</p> <p>② · ③ (생략)</p> <p>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<u>기본계획을</u> 세우면 그 내용을 고시(告示)하여야 한다.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.</p>	<p>제5조(농업기계화 기본계획) ①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 <u>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세워야</u> ---.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<u>기본계획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</u> -----</p> <p>-----.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
<p>제6조(시행계획)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행계획을 <u>세우고 시행하여야</u> 한다.</p>	<p>제6조(시행계획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수립·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야</u> -----.</p> <p>② <u>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특별시장·광역</u></p>
<p><신 설></p>	
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 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④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제출 시기,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한다.</u>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